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목 차>

1. 중소기업팩토링의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최성규
	담당부서 (과)	산업금융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권대영		연락처	02-2100-2862
	과장	김성조		이메일	skchoi12@korea.kr

2022. 1. 25. 작성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중소기업팩토링의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2.규제조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			
	3.위임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5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1.28. ~ 2.2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21.12.3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중소기업팩토링 운용의 한도 및 방법을 정하고자 함(100대 국정과제 :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7.규제내용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중소기업팩토링 대상 중소기업자 및 관련 채무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중소기업팩토링을 통해 중소기업 연쇄부도 방지,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지원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동 시행령은 현재 샌드박스에 의해 신용보증기금이 既 운용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법제화함으로써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 수단을 확충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 민간 금융을 이용하는 것 대비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규제비용은 없거나 미미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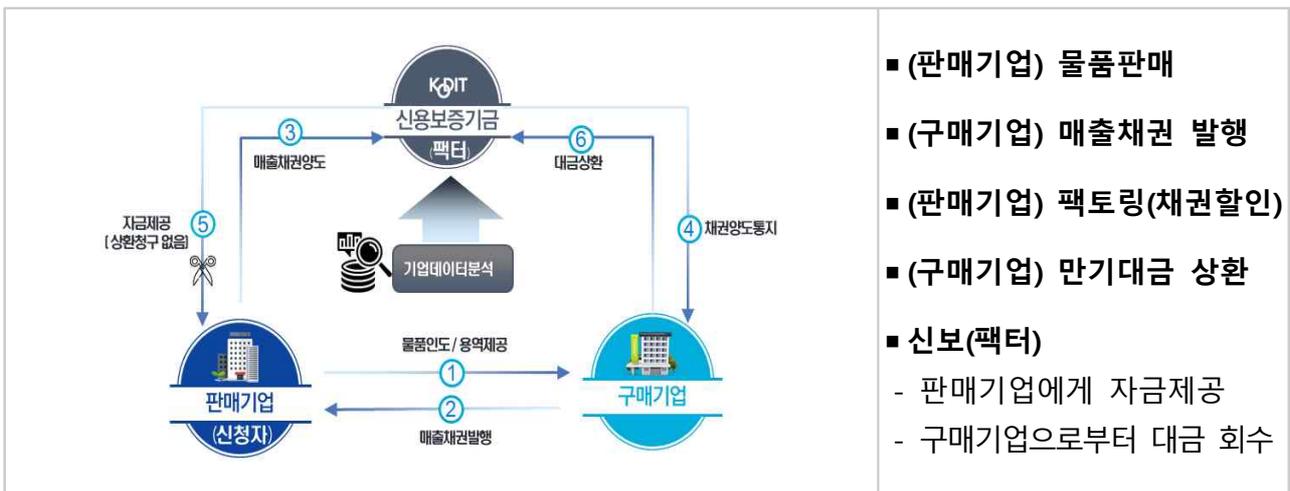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9조의9(중소기업팩토링의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u></p> <p><u>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팩토링의 운용규모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u></p> <p><u>② 기금이 같은 중소기업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한도는 100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③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팩토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은 매출채권의 매입조건을 해당 중소기업자와 협의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법으로 매출채권을 매입한다.</u></p> <p><u>④ 기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채권의 매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소기업자와 채무자의 경영 및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u>⑤ 기금은 제3항의 약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채무자에게 통보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한다.</u></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신용보증기금은 규제특례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22.3월말 지정기한이 만료될 예정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용 및 원활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한계
 - * 팩토링 : 팩터가 물품·용역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
- 이에 '21.12.31.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팩토링 운용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운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정부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을 100대 국정과제('17.7월)에 포함하였고, 세부사항인 약속어음 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중소기업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을 추진
 - 판매기업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즉시 현금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연쇄부도 위험 및 결제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함



- 정책금융기관(신보·기보·중진공)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는 대상기업, 심사방법 등에 집중해 차별적 팩토링 상품 운영하고, 민간으로의 확산 유도(기보·중진공은 '22년 시범사업 추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22.4월부터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운용 종료
	내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22.3월말) 만료에 따라 지원 제도 운용 종료
규제대안1	대안명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신설
	내용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팩토링의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에서 정하여 '22.4월부터 기존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중소기업팩토링으로 대체하여 지원 지속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해당사항 없음	혁신금융서비스 종료 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단
규제대안1	중소기업팩토링 운용에 관한 규정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다양성 제고 등	해당사항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중소기업자 및 관련 채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리로 신속히 현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혁신금융 운용 연장요청 현행 매출채권 기반의 금융상품은 구매기업 부도시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연쇄부도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어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 달라는 의견 기업별로 월별 매출채권 보유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수요에 부응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대 운용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반영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예정)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제도는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활성화되어있는 제도로, 국내에서도 선진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복잡한 이용절차 없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운용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의견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이해관계자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행유지 시 '22.3월말 혁신금융서비스(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지원제도 운용이 종료됨으로써 중소기업 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팩토링을 운용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운용규모와 방법을 정할 경우 현행 어음제도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대체함으로써 이용기업 편익이 증대될 것임
- 중소기업팩토링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기존에 신용보증기금이 지원 중인 매출채권보험의 경우 외상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손실을 보장하나 매출채권을 현금화하는 기능이 없음

구 분	팩토링 도입 효과
기 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융 이용에 따른 상환책임이 없어 고유 경영활동에 전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기업이 변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별도의 상환책임이 없어 판매기업인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연쇄도산의 부담 해소 ② 재무구조 악화 없이 금융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채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재무건전성 안정화
정 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금융시장 대출관행 개선을 통한 혁신금융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물적·인적 담보 및 상환청구권 행사 중심의 대출관행 개선 ④ 리스크가 높아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영역의 시장실패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은 상대적 리스크가 높아 민간 사업자는 높은 할인료를 부과하는 등 수익성 관점에서 접근
신 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신용정보·평가 등 혁신금융 인프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평가 및 보증·보험·구상권관리 제도 운용 경험을 통해 축적한 종합적 역량 결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규제목표

- 중소기업팩토링 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및 자금 조달 방식 다양화 등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동 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며,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제도 도입 요청에 따라 혁신적인 금융지원 방식인 중소기업팩토링을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동시에 재무구조 개선효과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적정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팩토링의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나, 본 제도는 해당 중소기업자의 신청에 따라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제도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자금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미국에서 시작된 팩토링 제도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으로 확산되어 유럽시장이 전 세계 팩토링 시장의 60%를 차지하며, 세계 팩토링 시장 규모('20년도 자국내 거래 기준) 1,321조원 대비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규모는 685조원으로 51.8%를 차지함

○ 타법사례

「상법」 제168조의12(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는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매입 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상환청구권 있는 팩토링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용보증기금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21년 시범사업 기간 중 44개 기업에 대해 202억원의 지원 실시

*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19.4.1.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하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22년도에 개정 「신용보증기금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안정적 제도 운용이 가능해지므로 기업들의 수요도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 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관련 법령에 업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은 없거나 미미

* 팩토링 신청·심사 등에 따른 비용 無, 민간 외담대 금리보다 저렴한 할인료로 편익 발생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중소기업팩토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준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팩토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기존 행정·인력 및 예산으로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 소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21.12.31.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중소기업팩토링 운용의 한도 및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반대의견 없음

- ('20. 4)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
- ('21. 2) 상품출시 및 시범운영 실시
- ('21. 4) 신보 팩토링 업무관련 신보법 개정안 발의*
 - * 민주당 김경만 의원^{산중위}('21.4.26.) ⇒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21.6.22.)
- ('21. 6)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 ※ 팩토링 사업이 국정과제 세부추진과제(약속어음 폐지)로 편입
- ('21. 6) '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신보법 개정 내용 반영
 - * 신보법 개정을 통한 팩토링 업무 법제화로 규제샌드박스 성과 가속화
- ('21. 12) 신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 국회 본회의 통과('21.12.9.) ⇒ 법률안 공포('21.12.31.)

2. 향후 평가계획

- 동 법령의 개정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조치

3. 종합결론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팩토링 운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민간의 혁신금융을 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